

창녕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03호 2024. 6. 13.(목)

조 례

- 창녕군 조례 제282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창녕군 조례 제2821호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5
- 창녕군 조례 제2822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창녕군 조례 제2823호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17
- 창녕군 조례 제2824호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창녕군 조례 제2825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규 칙

- 창녕군 규칙 제1212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 창녕군 규칙 제1213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창녕군 규칙 제1214호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 41

회 람								
--------	--	--	--	--	--	--	--	--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조례 제282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3% 이내	28% 이내	3.5% 이상	0.5%이내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100% 이내	-	-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u> <u>(제3조2항 관련)</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 문 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8% 이내</td> <td>33% 이내</td> <td>27% <u>이내</u></td> <td>4.5% <u>이상</u></td> <td>0.5% 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3% 이내	27% <u>이내</u>	4.5% <u>이상</u>	0.5% 이내	<p>[별표 2]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u> <u>(제3조제2항 관련)</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 문 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8% 이내</td> <td>33% 이내</td> <td>28% <u>이내</u></td> <td>3.5% <u>이상</u></td> <td>0.5% 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3% 이내	28% <u>이내</u>	3.5% <u>이상</u>	0.5%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3% 이내	27% <u>이내</u>	4.5% <u>이상</u>	0.5%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3% 이내	28% <u>이내</u>	3.5% <u>이상</u>	0.5% 이내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념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조례 제2821호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 읍장·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및 위촉) 명예 읍장·면장은 창녕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창녕군의회 의장·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읍·면 출신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출향인
2. 그 밖에 제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조(임기) 명예 읍장·면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역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 및 인재육성장학기금, 각종 군정 시책 홍보 등
2. 해당 읍·면으로의 귀농·귀촌 홍보
3. 해당 읍·면 주요행사 참석 및 창녕군의 관광자원 홍보
4. 그 밖에 해당 읍·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1. 군민의 날 및 군 단위 행사 등의 참여 기회 제공
2.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명예 읍장·면장에게 표창 수여

② 명예 읍장·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4조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장·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조례 제2822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시설구분	용도	기준	기본 사용료	비고
창녕공설 운동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1회 1시간	1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체육행사		15,000	
		체육경기이외		70,000	
	축구경기장	체육경기		25,000	
		체육행사		30,000	
		체육경기이외		70,000	
창녕 스포츠 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1회 1시간	50,000	
		체육경기이외		100,000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25,000	
		체육경기이외		70,000	
	정규 야구장	체육경기		25,000	
		체육경기이외		70,000	
리틀 야구장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이외	45,000			
창녕군민 체육관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60,000	
		체육경기이외	4시간	90,000	
창녕국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60,000	
		체육경기이외	4시간	90,000	
	풋살장	체육경기	1일1회1면	10,000	
		체육경기이외	1시간	25,000	
창녕반다비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50,000	
		체육경기이외	4시간	80,000	
영산국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50,000	
		체육경기이외	4시간	80,000	
창녕군민 탁구장	탁구장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60,000	
창녕오리정 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1일1회	25,000	
		체육경기이외	1시간	70,000	
창녕공설 테니스장	실내경기장	체육경기	1일1회(1면)	25,000	
	실외경기장		4시간	20,000	

- 1) 육상경기장은 육상경기 트랙을 위주로 사용하는 행위로 말하고, 축구경기장은 축구경기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3) 전용사용자가 부대 설비 및 철거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후의 사용시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50/10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2. 이용(연습사용)료

가. 창녕공설운동장 등 7개 체육시설

(단위: 원)

시설명	시설 구분	연습 종류	기 준	요 액	비 고
창녕공설 운동장	육상 경기장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 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단체연습		15,000	
	축구 경기장	개인연습		5,000	
		단체연습		15,000	
창녕 스포츠 파크	축구 경기장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연습		15,000	
	야구 경기장	개인연습		5,000	
		단체연습		15,000	
창녕군민체육관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연습		15,000	
창녕공설 테니스장	실내	개인연습	1회1면 2시간	20,000	
	실외			10,000	
창녕국민 체육센터	실내 체육관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연습		15,000	
	풋살장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연습		15,000	
영산국민 체육문화센터	실내 체육관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연습		15,000	
창녕군민탁구장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연습		15,000	

나. 창녕군립수영장 등 4개 시설

(단위: 원)

구분		성인 (19세이상)			중고생 (13~18세)			유아,초등 (12세 이하)			1회 입장요금		
창녕 군립 수영장 및 남지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월)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50,000	40,000	30,000	45,000	35,000	28,000	40,000	32,000	25,000	3,000	2,000	1,500
		강습			강습			강습					
	60,000			55,000			50,000						
헬스장 (월)	40,000									3,000	2,000	1,500	
창녕 반다비 체육 센터	수중 운동실 (월)	주5회	주3회	주5회	주3회	주5회	주3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40,000	30,000	35,000	25,000	30,000	20,000	2,500	1,500	1,000			
	헬스장 (월)	35,000						2,500	1,500	1,000			
영산 국민 체육 문화 센터	헬스장 (월)	35,000						2,500	1,500	1,000			
사물함(월)		3,000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10% 이용료를 감면함
4. 단체입장 할인: 20명 이상 10%, 50명 이상 20%
5. 사용시간

시설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수영장	06:00 ~ 22:00	09:00 ~ 18:00	09:00 ~ 18:00
헬스장	06:00 ~ 22:00	09:00 ~ 18:00	-

6. 정기휴관일
 - 수영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헬스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 공 통: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광판	1일1회 1시간	50,000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 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야간조명	1일1회 3시간	100,000	
애프시설	1일 1회	20,000	
전기 및 조명	kw	실제사용료(관허요금)	
냉·난방(보일러)	1일 1회	기본료(30,000원)+ 실제사용량 유류가격	
건축물의 이용 (매점,식당,사무실 등)	m ² 당 1일 1회	500	

4.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종류	기 준	사용료	비 고
선전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m ² 당 월액 1등급 2등급	5,000 4,000	·1m ² 미만은 1m ² 로 본다. ·15일 미만은 1/2월로 본다.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2등급: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본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2,000	
영화 및 비디오 촬영	조기 주간 야간	10,000 20,000 30,000	

5. 중계방송료

(단위: 원)

종 별	텔레비전 중계	라디오 중계	녹화 또는 녹음	비고
기 준	1일 1회	1일 1회	1일 1회	중계방송료는 주체자측에서 부담
요 액	20,000	20,000	중계방송료의 반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설운동장(축구장, 육상 경기장 포함),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군립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오리정운동장, 야구장, 탁구장, 족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 16. (생략)</p> <p>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전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u>군수 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u>“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 16. (현행과 같음)</p> <p><삭제></p>

[별표]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체육 시설물	시설 용도 별	경기장 별	기 준	기본 사용료	비 고
공 설 운동장	체육 경기	육상 경기장	1일1회 1시간 내	10,000	
		축구 경기장	"	25,000	
	체육 행사	육상 경기장	"	15,000	
		축구 경기장	"	30,000	
	체육 경기 이외	육상 경기장	"	70,000	
		축구 경기장	"		
스포츠 파 크	체육 경기	천연 잔디	"	5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조 잔디	"	25,000	
	체육 경기 이외	천연 잔디	"	100,000	
		인조 잔디	"	70,000	
군 민 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내	60,000		
	체육경기이외	"	90,000		

[별표]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시설 구분	용도	기준	기본 사용료	비 고
창녕 공설 운동장	육상 경기장	체육 경기	1일1회 1시간	10,000	
		체육 행사		15,000	
		체육 경기 이외		70,000	
	축구 경기장	체육 경기		25,000	
		체육 행사		30,000	
		체육 경기 이외		70,000	
창녕 스포츠 파 크	축구장 (천연잔디)	체육 경기	1일1회 1시간	5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체육 경기 이외		100,000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 경기		25,000	
		체육 경기 이외		70,000	
	정규 야구장	체육 경기		25,000	
		체육 경기 이외		70,000	
리틀 야구장	체육 경기	15,000			
	체육 경기 이외	45,000			
창녕 군민 체육관	실내 체육관	체육 경기	1일1회 4시간	60,000	
		체육 경기 이외		90,000	

(단위: 원)

체육 시설물	시설 용도 별	경기장 별	기 준	기본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체육경기		1일1회(1면) 4시간 내	2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 민 체육 센터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내	80,000	
	체육경기이외		"	100,000	
탁구장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내	60,000	

(단위: 원)

시설명	세부 시설	용도	기 준	기본 사용료	비 고
창녕 국민 체육 센터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6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체육경기이외		90,000	
	풋살장	체육경기	1일1회 1면 1시간	10,000	
		체육경기이외		25,000	
창녕 반다비 체육 센터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50,000	
		체육경기이외		80,000	
영산 국민 체육 문화 센터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50,000	
		체육경기이외		80,000	
창녕 군민 탁구장	탁구장	체육경기	1일1회 4시간	60,000	
창녕 오리정 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1일1회 1시간	25,000	
		체육경기이외		70,000	
창녕 공설 테니스장	실내 경기장	체육경기	1일1회 (1면) 4시간	25,000	
	실외 경기장			20,000	

2.이용(연습사용)료

가. 공설운동장 등 6개 체육시설 (단위: 원)

시설별		연습 종류	기 준	요 액	비 고
공설 운동장	육상 경기장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당</u>	1,000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 로 동시에 입장 하는 것으로 20 명을 초과할 경 우 20명 단위 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 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 징한다.
		단체 연습	"	<u>2,000</u>	
공설 운동장, 스포츠 파크	축구 경기장	개인 연습	"	1,000	
		단체 연습	"	<u>3,000</u>	
군민체육관		개인 연습	"	1,000	
		단체 연습	"	<u>10,000</u>	
테니스장		개인 연습	<u>1회1</u> <u>면</u> <u>2시간</u> <u>당</u>	<u>5,000</u>	
국민체육센터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당</u>	1,000	
		단체 연습	"	15,000	
탁구장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당</u>	1,000	
		단체 연습	"	<u>10,000</u>	

2.이용(연습사용)료

가. 창녕공설운동장 등 7개 체육시설 (단위: 원)

시설명	시설 구분	연습 종류	기 준	요 액	비 고
창녕공설 운동장	육상 경기장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5,000</u>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 로 동시에 입장 하는 것으로 20 명을 초과할 경 우 20명 단위 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 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 징한다.
		단체 연습		<u>15,000</u>	
	축구 경기장	개인 연습		<u>5,000</u>	
		단체 연습		<u>15,000</u>	
창녕 스포츠 파크	축구 경기장	개인 연습	<u>5,000</u>		
		단체 연습	<u>15,000</u>		
	야구 경기장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5,000</u>	
		단체 연습	<u>15,000</u>		
창녕군민 체육관		개인 연습	<u>1회</u>	<u>5,000</u>	
		단체 연습	<u>2시간</u>	<u>15,000</u>	
창녕공설 테니스장	실내	개인 연습	<u>1회1</u> <u>면</u> <u>2시간</u> <u>당</u>	<u>20,000</u>	
	실외			<u>10,000</u>	
창녕국민 체육센터	실내 체육 관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5,000</u>	
		단체 연습		15,000	
	풋살 장	개인 연습	<u>1회</u>	<u>5,000</u>	
		단체 연습	<u>2시간</u>	<u>15,000</u>	
영산국민 체육문화 센터	실내 체육 관	개인 연습	<u>1회</u> <u>2시간</u>	<u>5,000</u>	
		단체 연습		<u>15,000</u>	
창녕군민 탁구장		개인 연습	<u>1회</u>	<u>5,000</u>	
		단체 연습	<u>2시간</u>	<u>15,000</u>	

나. 군립수영장

(단위: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이하)			1회 입장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수영장(월)	50,000	40,000	30,000	45,000	35,000	28,000	40,000	32,000	25,000	3,000	2,000	1,500
헬스장(월)	40,000									3,000	2,000	1,500
사물함(월)	3,000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10% 이용료를 감면함
4. 단체입장 할인: 20명 이상 10%, 50명 이상 20%
5. 사용시간

시설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06:00 ~ 22:00	06:00 ~ 18:00	-

6. 정기휴관일
 - 수영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헬스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 공 통: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

나. 창녕군립수영장 등 4개 시설 (단위: 원)

구분	성인 (19세이상)			중고생 (13~18세)			유아,초등 (12세 이하)			1회 입장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창녕군립수영장 및 남지국민체육센터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3,000	2,000	1,500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50,000	40,000	30,000	45,000	35,000	28,000	40,000	32,000	25,000			
	강습			강습			강습					
	60,000			55,000			50,000					
헬스장(월)	40,000									3,000	2,000	1,500

구분	수중운동실(월)	주5회	주3회	주5회	주3회	주5회	주3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창녕반다비체육센터	40,000	30,000	35,000	25,000	30,000			
	헬스장(월)	35,000						2,500	1,500	1,000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35,000						2,500	1,500	1,000

사물함(월) 3,000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10% 이용료를 감면함
4. 단체입장 할인: 20명 이상 10%, 50명 이상 20%
5. 사용시간

시설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수영장	06:00 ~ 22:00	09:00 ~ 18:00	09:00 ~ 18:00
	06:00 ~ 22:00	09:00 ~ 18:00	-

6. 정기휴관
 - 수영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헬스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 공 통: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조례 제2823호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등록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조례 제2824호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단독주택등 수요가부담”을 “수요가부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협약체결) 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공급요청 구간주소	시 점			
	중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	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p> <p>-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p> <p>-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p> <p>-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p> <p>-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p> <p>-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p> <p>- 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녕군, 경남에너지(주)</p> <p>-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p> <p>-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p> <p>-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p> <p>-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p> <p>- 동의자는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p>	
<p>「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20px;">창녕군수 귀하</p>				
첨부서류	<p>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p> <p>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p>			

(뒷면)

세 부 내 역

연번	성 명 (남, 여)	주 소	연락처	건물소유 여 부	세대수 (계량기 설치대수)	서 명 또는 인	비 고 (수급자, 차상위 여부)
계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단독주택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u></p> <p>5. ~ 7.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단독주택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u></p> <p>4. <u>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수요가부담</u> ----- ---</p> <p><u><삭제></u></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공급요청 구간주소	시 점				
	종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	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녕군,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하는 경우) 2. 사외특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협약체결) 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공급요청 구간주소	시 점				
	종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	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녕군,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뒷면의 세부내역에 날인하거나 서명함.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				

(뒷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

연번	성명 (남, 여)	주소	세대수 (계량기수)				건축물 용도		연락처	서명	
			세대수 (계량기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정로당 마을 회관			사회복 지시설
				일반	수료 자	일반	수료 자				
		계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뒷면)

세부내역

연번	성명 (남, 여)	주소	연락처	건물소유 여부	세대수 (계량기 설치대수)	서명 또는 인 일	비고 (수급자 사유 여부)
		계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조례 제2825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주거지역 안”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띄어서”를 “띄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을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를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u>일반주거지역</u>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u>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u>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u>띄어서</u> 건축하여야 한다.</p> <p>1. 삭 제</p> <p>2. 높이 <u>9미터 이하인</u> 부분은 <u>인접대지 경계선</u>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3. 높이 <u>9미터를 초과하는</u> 부분은 <u>인접대지 경계선</u>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② 삭 제</p> <p>③ ~ ⑤ (생략)</p> <p><u><신설></u></p>	<p>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 <u>일반주거지역</u> ----- ----- <u>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u>----- ----- 띄어 -----.</p> <p>2. --- <u>10미터 이하인</u> 부분: <u>인접대지경계선</u>----- --</p> <p>3. --- <u>10미터를 초과하는</u> 부분: <u>인접 대지경계선</u>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u> <u>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u></p> <p><u>②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u></p>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
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신 설>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
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
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규 칙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규칙 제1212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총계	820(2)	414(2)	20	73	80	57	176
정무직 합계	1	1	0	0	0	0	0
정무	1	1					
일반직 합계	789(2)	406(2)	20	50	80	57	176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39	17	3	3	2	2	12
행정	4	3	1				
의무	0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5	5					
농업·농촌지도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0	0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보건·환경	0	0					
행정·환경·시설	0	0					
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6					2	4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녹지·보건	1						1
행정·농업·녹지·환경	0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행정·농업·보건·시설	0					0	
행정·농업·보건·환경	0						0
행정·농업·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의료기술·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의료기술·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6급 소계	205	106	5	16	12	16	50
행정	26	23	3				
사회복지	1	1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1	1					
보건진료	4				4		
시설	8	7				1	
운전	3	1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0						
행정·세무	6	5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숙기	0		0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4	2				4	8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0	0					
행정·시설	25	24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농촌지도	1			1			
농업·수의	3			3			
농업·농촌지도	4			4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5					1	4
행정·전산·농업	1	1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0	1
행정·사회복지·공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9					1	8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5	1					4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3					
행정·농업·녹지	0						0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2					
행정·환경·농촌지도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1			4		
행정·세무·농업·녹지	3					1	2
행정·세무·농업·시설	11						1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2					2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6	1				1	4
행정·농업·환경·수의	2	2					
7급 소계	244	147	7	14	17	15	44
행정	41	36	3			1	1
세무	2	2					
사회복지	12	6				2	4
전산	1	1					
공업	6	5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4				4		
보건진료	4				4		
간호	3				3		
시설	19	13				1	5
운전	5	4	1				
건축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행정·세무	12	8				1	3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행정·사회복지	10	4				3	3
행정·속기	1		1				
행정·전산	7	6	1				0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6	2		1		2	2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3	28		1	1	1	2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3	2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5	2		3			
농업·시설	2			2			
농업·농촌지도	2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농업·환경	5	5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농촌지도	1			1			
행정·방재안전·방송통신	1	1					
공업·보건·환경	1	1					
8급 소계	220(1)	102(1)	3	13	40	18	44
행정	13(1)	11(1)	2				
사회복지	16	5				5	6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1	1					
보건	3				3		
보건진료	6				6		
의료기술	7				7		
간호	2				2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시설	19	10				2	7
운전	5	3		1	1		
기계운영	0	0					
행정·세무	9	6				2	1
행정·사회복지	13	7					6
행정·사서	2	2					
행정·숙기	1		1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7	2		1		4	10
행정·보건	4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5	3				2	
행정·시설	35	27		1		1	6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0						
공업·환경	0						
공업·시설	2	2					
농업·보건	2			2			
농업·농촌지도	2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6				6		
보건·간호	23				13	2	8
환경·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7	5		2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환경·시설	2	2					
9급 소계	75(1)	30(1)	2	3	8	6	26
행정	4(1)	3(1)	1				
사회복지	6	0				1	5
녹지	1	1					
보건	3				3		
시설	0	0					
운전	2	1			1		
사무운영	0	0					
행정·세무	7	2				0	5
행정·사회복지	19	3				2	14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행정·사서	0						
행정·숙기	0		0				
행정·전산	0	0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7	1		2		2	2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0			0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4	13				1	
전산·방송통신	3	2	1				
공업·농업	1			1			
공업·시설	0	0					
보건·의료기술	4				4		
환경·시설	0	0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0						
전문경력관 나군 소계	1			1			
농기계 수리·교육	1			1			
별정직 합계	1	1	0	0	0	0	0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연구직 합계	6	6	0	0	0	0	0
연구사 소계	6	6					
학예연구	5	5					
기록연구	1	1					
지도직 합계	23	0	0	23	0	0	0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	0			0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농업·시설·농촌지도	1			1			
지도사 소계	21			21			
농촌지도	21			2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총계	본청		농업 기술 센터	보 건 소						농업 기술 센터	보 건 소			
총계	820(2)	414(2)	20	73	80	57	176			20	73	80	57	176	
일반직 합계	789(2)	406(2)	20	50	80	57	176			20	50	80	57	176	
...															
5급 소계	39	17	3	3	2	2	12								
...															
행정·공업·시설	<u>1</u>	<u>1</u>													
...															
행정·환경·시설	<u>1</u>	<u>1</u>													
...															
6급 소계	205	106	5	16	12	16	50								
행정	<u>27</u>	<u>24</u>	3												
...															
기계운영	<u>0</u>	<u>0</u>													
...															
행정·농업	14	<u>1</u>				4	<u>9</u>								
...															
행정·시설	<u>26</u>	<u>25</u>		1							1				
...															
행정·세무·농업	<u>6</u>					1	<u>5</u>						1	<u>4</u>	
...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u>1</u>	<u>0</u>						<u>0</u>	<u>1</u>	
...															
행정·사회복지·공업	<u>1</u>					1	<u>0</u>						1	<u>2</u>	
...															
행정·사회복지·농업	<u>8</u>					<u>0</u>	8						<u>1</u>	8	
...															
행정·농업·녹지	<u>1</u>						<u>1</u>							<u>0</u>	
...															
7급 소계	244	147	7	14	17	15	44								
행정	<u>42</u>	36	<u>4</u>			1	1						1	1	
...															
운전	<u>4</u>	4	<u>0</u>												
...															
기계운영	<u>0</u>					<u>0</u>								<u>1</u>	
사무운영	<u>2</u>		1				<u>1</u>				1			<u>2</u>	
행정·세무	<u>14</u>	<u>9</u>				<u>2</u>	3						<u>1</u>	3	
행정·사회복지	<u>9</u>	<u>3</u>				3	3						3	3	
...															
행정·전산	7	<u>5</u>	1				<u>1</u>							<u>0</u>	
행정·공업	<u>1</u>	1				<u>0</u>							<u>1</u>		
행정·농업	<u>28</u>	2		1		<u>3</u>	<u>22</u>				1		<u>2</u>	<u>21</u>	
...															
행정·시설	<u>32</u>	28		1	1	1	<u>1</u>				1	1	1	<u>2</u>	

현행								개정안							
직급·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직급·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총계	본청		농업 기술 센터	보건 소				총계	본청		농업 기술 센터	보건 소		
...								...							
행정·농업·환경	6	6						행정·농업·환경	5	5					
8급 소계	207(1)	91(1)	3	13	38	18	44	8급 소계	220(1)	102(1)	3	13	40	18	44
...								...							
운전	3	1		1	1			운전	5	3		1	1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0	0					
...								...							
행정·사회복지	9	3					6	행정·사회복지	13	7					6
...								...							
행정·보건	2	2			0			행정·보건	4	2			2		
...								...							
행정·시설	30	22		1		1	6	행정·시설	35	27		1		1	6
...								...							
행정·농업·환경	6	4		2				행정·농업·환경	7	5		2			
...								...							
9급 소계	88(1)	41(1)	2	3	10	6	26	9급 소계	75(1)	30(1)	2	3	8	6	26
행정	5(1)	4(1)	1					행정	4(1)	3(1)	1				
사회복지	7	1				1	5	사회복지	6	0				1	5
...								...							
운전	4	3			1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0	0					
...								...							
행정·사회복지	22	6				2	14	행정·사회복지	19	3				2	14
...								...							
행정·농업	8	2		2		2	2	행정·농업	7	1		2		2	2
...								...							
행정·환경	2	2					0	행정·환경	1	1					0
행정·시설	16	15					1	행정·시설	14	13					1
전산·방송통신	2	1	1					전산·방송통신	3	2	1				
...								...							
보건·의료기술	6				6			보건·의료기술	4				4		
...								...							

규 칙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규칙 제1213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를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를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환경국: 관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우포생태따오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광환경국: ----- ----- ---, <u>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 ----- ----- ----- ----- ----- ----- ----- -----.		
3. 건설산업국 : 건설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건설산업국 : ----- ----- ----- -----, <u>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 ----- ----- ----- ----- -----.		

규 칙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6월 13일

창녕군 규칙 제1214호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u>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u></p> <p><u>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 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u></p>	<p><삭 제></p>